고려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기술창업학과 비전임교원 임용공고

○ **분야별 모집인원**

모집분야	선발직종	인원
기술창업학과 환경벤처 전공	겸임교수	0명

- 임용예정일: 2027.03.01. / 임용기간: 2027.03.01.~2028.02.29.(1년)

○ **지원자격**

- 공통사항: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,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공통사항 외 직종별 지원자격은 별도자료 참조

○ **제출기한**

- 2026년 11월 24일(화)까지 이메일로 송부(esg9005c@korea.ac.kr)

○ **지원절차**

- 지원방법 : 이력서를 이메일로 송부(esg9005c@korea.ac.kr)
- 지원자 중 임용부서에서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 (http://invite.korea.ac.kr)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.

【제출서류】

1.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최종학위증명서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
2. 신분증명서(내국인은 주민등록초본/외국인은 여권사본)
3.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* 또는 성범죄경력조회(본인)회신서**
   *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
4. 강의계획서, 활동계획서
5. 그 밖에 직종별 자격기준 판단을 위한 필요 서류(겸직동의서 등)

○ **기타사항**

-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,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.
-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.
- 지원자의 성별, 신앙, 신체조건, 출신지역,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음.
- 문의사항은 융합과학대학원 기술창업학과 행정팀(044-860-1305)로 연락바람.

고려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장

【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기준】

1. 겸임교원: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・실험・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

가.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
나.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
다. 원소속기관에서 상시(유사경력 3년 이상)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(다만,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의한 '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)(전일근무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 포함)

라.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

2. 초빙교원: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다음 각목의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가.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

나.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

다.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

라.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자

3. 산학협력중점교수: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경력(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중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) 10년 이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. 단,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.

가.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이 1회 이상인 자(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)

나. 기술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

다. 석/박사 학위 소지자(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,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)

4. 객원교수: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으로서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함.

가. 교육·연구·학생지도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력과 업적을 갖춘 사람

나. 본교와의 협약 등을 통하여 협동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연구기관 소속의 선임·책임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에 종사하거나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('대학원 학·연·산 협동과정 객원교수')